

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판로개척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를 위하여 「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판로개척형 지원사업: 더현대Hi·우체국쇼핑 입점지원 프로젝트」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6년 8월 7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

1

공고 개요

□ 사 업 명: 2026년 오픈이노베이션 판로개척형 지원사업
- 더현대Hi·우체국쇼핑 입점지원 프로젝트

□ 사업목적

- 대·중견기업 유통망 인프라를 활용하여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
- 스타트업 판로개척 확대로 동반성장과 창업생태계 발전에 기여

□ 협업파트너 현대백화점, 국민연금공단, 전북지방우정청,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

□ 모집대상: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소재
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(농식품 제조 분야 우대)

□ 입 점 처: 더현대Hi(<https://hi.thehyundai.com>), 우체국쇼핑(<https://mall.epost.go.kr>)

□ 모집규모: 28개사 내외(더현대Hi 13개사, 우체국쇼핑 15개사)

□ 지원내용: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입점에 필요한 과정 지원

2

신청자격 및 모집분야

- **모집대상:**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희망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본사 소재
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기업(농식품 제조 분야 우대)

- **신청가능 업력:** 2019. 8. 8. 이후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
 - * 개인사업자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
 - * 법인사업자: 법인부등기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
 - *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
 - *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,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
 - *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사업자(개인·법인)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, '창업인정 기준'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□ 신청 제외대상

-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도용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작성된 경우
-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
- 공고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기업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* 단, 신청마감일('26. 8. 21.)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·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,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은 신청 가능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 - * 단, 신청마감일('26. 8. 21.)까지 체납처분유예승인을 받은 자, 국세·지방세 등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 등은 신청 가능
- 중소벤처기업부, 전북특별자치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(기업)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(기업)
-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○ 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3

지원내용

- ☐ **지원기간:** 약 3개월(협약일~2026. 11. 30.)
- ☐ **지원내용:**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판매 지원
 - 더현대Hi: 기획전 광고지원(할인쿠폰, 외부광고 등), 품평회, 콘텐츠 제작, 세부페이지 제작 및 제품촬영, 전문가 지원 등
 - 우체국쇼핑: 입점비 및 입점기획, 프로모션, 상세페이지 제작, 제품 기획 컨설팅 등 입점에 필요한 과정
 - ※ 판매수수료는 자부담으로 별도 지원하지 않음
- ☐ **후속지원**
 - 우수 판매 및 혁신 제품 단독 기획전 기회 제공 등 스케일업 지원
 - 글로벌 프로그램 등 후속 사업 연계 지원 예정(센터)

4

광고 및 접수

- ☐ **신청기간:** 2026. 8. 7.(금)~8. 21.(금) 14:00까지
- ☐ **신청방법:** 전북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(<http://event.jbci.or.kr>) ⇨ 사업신청 ⇨ 해당사업 '상세보기' ⇨ 신청서 다운로드 ⇨ 작성 후 '신청하기'(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) ⇨ '온라인 접수'

※ 유의사항

- 1)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~3일 전에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(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)
- 2) 제출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신청이 완료되며, 첨부파일이 없는 기업은 최종 접수 신청을 완료 한 것으로 보지 않음
- 3) 업로드 자료 파일의 최대 크기는 20MB로 제한되어 있음
- 4) **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 접수가 불가함**

- ☐ **신청문의:**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민관협력팀 T.063-220-8936

□ 제출서류

※ 증빙서류는 **공고일 이후** 발급분만 인정

구분	제출서류		필수여부
1	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		필수
2	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		필수
3	■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책임 동의서 1부		필수
4	■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		필수
5	■ 개인	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폐업사실증명(폐업 이력 있을 시)	필수
	■ 법인	사업자등록증,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, 법인등기부등본, 폐업사실증명(폐업 이력 있을 시)	
6	■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		필수
7	■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1부		필수
8	■ 벤처기업 확인서 1부		해당 시

○ 제출서류 발급처

구분	제출서류명	발급처
필수서류	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	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	국세 완납증명서	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(www.hometax.go.kr)
	지방세 완납증명서	정부 24 또는 주민센터 (https://www.gov.kr)
	법인등기부등본(법인만 해당)	등기소 또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(www.iros.go.kr)
	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	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s://sminfo.mss.go.kr)

□ 선정기준

평가항목	세부내용
I. 사업성	제품구성 및 가격 적정성
II. 필요성	사업 참여목적 및 판매 계획
III. 시장성	가격 경쟁력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적정성
IV. 성장가능성	성장가능성 및 기대효과

5

선정절차

□ 선정절차

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입점처별 평가 별도 진행

공고 및 선정절차		세부내용
1단계	공고 및 접수	■ 온라인 플랫폼 입점 희망기업 모집 ※ 입점처별 신청기업 수가 선발 예정기업 수보다 적을 경우 연장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
	~8월 3주차	
2단계	★더현대Hi★ 서류평가 (스크리닝)	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스크리닝을 통한 품평회 (밋업) 참여기업 선발 -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- 더현대Hi 입점 및 협업 적합여부 검토(더현대Hi 자체 심사)
	8월 4주차	
	★우체국쇼핑★ 서류평가 (최종선정)	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기반 서면심사를 통한 지원기업 최종 선발 -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검토 - 우체국쇼핑 입점 및 협업 지원기업 최종 결정 *심사기준: 사업성(25), 필요성(25), 시장성(30), 성장가능성(20)
	9월 1주차	
3단계	★더현대Hi★ 품평회 및 밋업 (최종선정)	■ 품평회 및 더현대Hi 현업부서-신청기업 간 밋업을 통한 지원기업 최종 선발 - 더현대Hi 입점 및 협업 지원기업 최종 결정 *심사기준: 사업성(25), 필요성(25), 시장성(30), 성장가능성(20)
	9월 1주차	
4단계	선정결과 발표	■ 최종 선정기업 발표 및 협약체결(9월 2주차) - (협약)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↔ 지원기업 ※ 최종 선정기업 중도포기,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로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
	9월 2주차	

*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계획, 서류, 증빙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시 마감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,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센터는 책임지지 않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협업제안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협업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평가 관련 유의사항

-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자(기업)가 없을 수 있음
- 품평회 및 밋업은 신청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 필수
- 신청자격 요건에 미충족 되거나, 신청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
-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지원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

8

문의처

문의처	연락처
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본부 민관협력팀	063-220-8936

참고

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(기창업자 해당, 공고일 기준)

□ 창업여부 기준

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창업아님 ☆
		이종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창업아님 ★ * '20.10.7.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
		동종창업	창 업
			창 업
			창업아님
			창 업
		성실경영실패자	창 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창 업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
		동종창업	창 업
			창 업
			창업아님
			창 업
			창업아님
		성실경영실패자	창 업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
	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	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
		동종창업	창 업
			창업아님 * '20.10.7.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
		단독,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
		단독,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 ★ * '22.6.28.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창업아님 ★ * '22.6.28. 이전 창업은 경과조치 적용 여부 확인

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요약으로, 원문 확인 필요

※ ★ :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(창업의 범위) 제②항에 따라 창업 제외 요건을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

※ ☆ : 상속·증여 받은 기업이 창업기업인 경우,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창업기업으로 인정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「한국표준산업분류(제11차)」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“동종”

* 국가데이터처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성실경영실패자 : 중진공의 재도전종합지원센터에서 성실경영심층평가(동종업종)를 통과한 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1항 3호에 근거하여 성실경영실패자로 인정받은 것에 한함

* 재도전종합지원센터 : rechallenge.or.kr

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 등을 통해 확인